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8 선고 2020나52627(본소), 2020나52634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전강우, 전현주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C

변 론 종 결 2021. 8. 18.

판 결 선 고 2021. 9. 8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6. 19. 선고 2019가단805(본소),

2019가단7240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4,263,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3,30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.

나. 반소

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, 24호증의 각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[갑 제18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의 주차장 공사는 2018. 5. 이후 착공된 것으로 보인다. 갑 제23호증(녹취록 사본)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통화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위 통화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착공 시점 상당 기간 전인 같은 해 3. 27.에 이루어졌으므로, 그 시기상 추후 시공될 주차장 공사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]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민수, 판사 신민석, 판사 양우창